"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지 역 경 제 과-35263
등록일자	2015.9.24.
결 재 일 자	2015.9.2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유통관리팀장	지역경제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직무대리	
서미진	강민정	권승원	김용운	전결 09/25 주윤중	
협조자					

- 2015년 상반기(제17차) 대부(중개)업체 -

영업보고서 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



2015. 9.

강 남 구 (지역경제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 해당 조항을 발췌하여 보고서 말미(맨 뒷장) 첨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부터 금융이용자 보호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수 혜 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대상 : 금융이용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신규: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① 관련부서 협조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법정 사무로써 타구 사례도 비슷하거나 동일함
전 문 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영업보고서 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영업실태점검 및 효율적인 관리·감독 기능수행을 위하여 2015년 6월30일자 기준 대부업체 영업보고서 내용을 점검하고 미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현장점검 실시한 결과임

I 관련근거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2조(검사 등)』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6조(대부업자의 실태 조사 등)』
- □ 서울시 민생경제과-15974(2015.07.02)
- □ 강남구 지역경제과-25015(2015.07.06)

Ⅲ 개 요

□ 기 간 : 2015. 7. 03(금) ~ 10. 30(금)

□ 대 상 : 2015.06.30. 기준 등록업체 (단위:개소)

7 8	ᄎ게	개인		법	인	
一 下 正	총 계	게인	소 계	100억미만	100억이상	지 점
업체수	615	271	344	270	51	23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구분하여, 겸업업체 2개소로 신정한 것임.(대부업 470개, 대부중개업 137개)

□ 일 정

○ 영업보고서 제출 대상자 선정 : 2015. 7. 3(금)

O 영업보고서 제출 안내문 발송 : 2015. 7. 6(월)

O 영업보고서 접수 마감일 : 2015. 7. 24(금)

○ 영업보고서 점검 · 상급기관 통보 : 2015. 8. 7(금)

□ 점검 방법 : 서면검사 (필요시 현장 방문)

- □ 접수 방법 : 우편·이메일·팩스 및 현장방문 접수
- □ 점검 내용
 - O 영업보고서 제출 여부
 - 최근 6개월간 영업 실적
 - O 보고서 미제출 대부(중개)업체 소재지 확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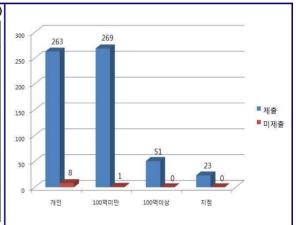
Ⅲ 세부추진결과

1. 점검결과 총평

- □ 이번 영업보고서 수검은 전체 대상업체 615개소 중 606개소가 참여 함으로써 98.5% 참여율을 보였으며,
- □ 전년도 하반기 실태조사 참여율 96.3%보다 2.2% 증가한 98.5%로 나타남.

2. 영업보고서 제출현황

					(단	위: 개소)
	-L1 -11	-11 61		법	인	
구 분	합계	개인	소계	100억 미만	100억 이상	지점
합 계	615	271	344	270	51	23
제 출	606	263	343	269	51	23
미제출 9 8 1 1 0 0						
※미제출 사유 : 소재지 불명 등						
※대부,대부중개업 겸업포함						



결과 분석

- □ 제출비율은 100억 이상 법인(100%), 지점(100%),100억 미만 법인(99.6%), 개인업체(97%), 순으로 나타남.
- □ 대부(중개)업체의 보고서 미제출 사유는 소재불명(우편반송), 폐업, 전출 등으로 나타남.
 - ☞ 소재지 불명확업체는 2015년 상반기 소재지 불명업체(10개소)대비 40% 감소한 6개소로 파악됨.

3. 대부[중개]업 등록업체현황

규모별 등록업체현황

. (단위: 개소)

합계			법	인(B)	
(A+B)	개인(A)	소계	100억 미만	100억 이상	지점
615	271	344	270	51	23



업태별 등록업체현황

. (단위: 개소)

합 계(A+B+C)	대부업(A)	대 부 중개업(B)	겸 업(C)
615	375	38	202



결과 분석

- □ 업체 규모별로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업체가 가장 많았으며, 법인등록업체는 자산규모 100억 미만 법인, 100억 이상 법인, 법인 지점 순으로 등록되어 있음. 업태별로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가장 많고 겸업업체, 중개업체 순으로 등록됨.
 -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더불어 개인 대부업체는 꾸준히 신규업체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며, 올해 대부업법 개정과 더불어 2016년부터 이자율이 29.9%로 낮아짐에 따라 폐업하는 중견 대부업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특히, 서울시에 등록된 3,077개(2015.6.30기준)의 대부업체 중 615개의 대부업체(19.9%)가 강남구에 등록 되어있음
 - ☞ 기존 신용대출만 취급하는 대부업체에 비해 자금 회수가 비교적 안정적인 전당포 업체수가 늘어 나고 있으며, 타 지역에 비해 담보물의 가치가 높은 물건이 많은 강남에 밀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일부 대형 대부업체는 업체 규모성장에 따른 사무실 부족으로 상대적으로 지가(임대료)가 저렴한 자치구로 영업소를 이전함.

4. 대부업체 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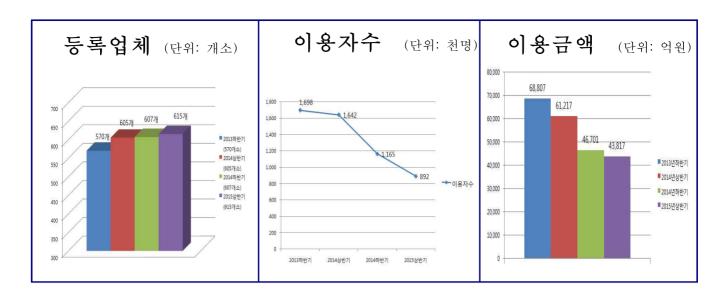
구분	총 계	개인 대부업체	100억 미만 법인 업체	100억 이상 법인 업체	법인 지점
대출인원	892,575명	5,180명	35,470명	801,264명	11,061명
대출금액	4,381,794,120천원	64,358,100천원	238,844,218천원	4,028,508,460천원	50,083,342천원

결과 분석

- □ 2015. 6월말 기준 현재 강남구에 있는 대부업체를 이용 중인 사람은 89만 2천여명이며, 그중 자산 100억 이상 법인을 이용 중인 사람은 80만 1천여명임.(전체 이용인의 89.7%)
- □ 2015. 6월말 기준일 현재 강남구에 있는 대부업체를 이용한 대부금액은 4조3817억여원이며, 그 중 자산 100억 이상 법인을 이용한 대부금액은 4조3,683억여원임.(전체 이용금액의 91.9%)
- □ 대부업체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4,909천원으로 2014년 하반기 대비 총 대출금액은 줄어들었으나, 1인당 평균 대출금액 2014년하반기(3,991천원)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5. 상반기 대비 영업보고서 점검결과

구분	2013 하반기	2014 상반기	2014 하반기	2015상반기	2014 하반기 대비 증감비율
업체수	570개소	605개소	607 म	615개	중 1.3%
제출업체 (제출율)	535개소 (94.0%)	579개소 (95.7%)	585개소 (96.3%)	606개소 (98.5%)	증 2.2%
이용자수	169만8천여명	164만2천여명	116만5천여명	89만2천여명	감 23%
이용금액	6조8,807억원	6조1,217억원	4조6,701억원	4조3,817억원	감 6.1%



결과 분석

-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2011.6.27, 2014.1.1.)으로 최고 연이자율이 44% →39%→34.9%→29.9%(2016.1.1시행예정)로 인하되었고, 중개수수료 상한 규정(대부금액의 5%범위) 신설(2013.6.12)에 따라 수익성 감소로 자진폐업하는 업체가 늘어나는 추세이나 전당영업 및 P2P대출업체 등 신용대출 영업과 구분되는 영업형태의 신규등록 업체의 증가로 전체 대부업체수는 2014년 하반기와 비교하여 소폭 상승(1.3%)
- □ 대출금과 대출자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이자율과 중개 수수료율 상한선 인하 등의 정책 리스크와 경기 회복 부진에 따른 대 손비용 부담으로 인해 시장 전반의 영업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지 속적인 영업활동 둔화로 인해 2014하반기 대비 대부업체 이용자수와 이용금액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

₩ 행정처분 실시

1.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현장점검

가. 점검기간 : 2015. 8. 24(월) ~ 9. 8(화)

나. 점검대상 : 실태조사 결과 미제출 업체 중 소재지 불명인 업체

구분		보고서 미제출	점검유무
TE	대상수	사유	<u> </u>
법인	1개소	소재지불명 (1개소)	0
		소재지불명(5개소)	0
개인	8개소	보고서 미제출 (1개소)	0
게인	0/11/22	영업중이나 보고서 제출기한 경과(1개소)	0
		타구 전출(1개소)	0

다. 점검방법 : 2인1조에 점검반 편성하여 점검

- 점 검 자 :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포함 2인1조 편성점검

- 점검내용 : 등록된 사업장 주소지에서 정상 영업 중인지 여부 확인

영업보고서 미제출 사유 확인 및 폐업유도 등 행정지도

- 점검절차

1차 (사전확인)		2차 (현장 점검)	행정처분
∘ 영업보고서 제출 여부			▷ 등록취소
∘개별연락 : 사무실 및			• 사전처분통지서발송
휴대전화 등		확인서 미제출 대부업체	 - 영업장소재지
• 소재확인 등기발송	\rightarrow	현장확인	- 대표자 주소
- 대표자 등 자택주소			• 직권취소 공고 등
- 확인서 첨부			절차 진행

2. 행정처분 조치결과

- □ 대 상: 영업보고서 미 제출업체 9개소(법인1, 개인8)
- □ 추진기간: 2015.9.23. ~ 10.31
- □ 행정처분 내역
 - 가. 영업보고서 미제출 업체: 1개소 과태료 부과(2,000천원)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함.) 별표1.2』

나. 대부(중개)업체 소재지 불명 : 등록취소(6개소)

『 대부업법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2항 6호』

다. 자진폐업: 1개소

라. 타시도 전출: 1개소